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29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6인

나. 제안일 : 2024년 9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사업 등) (생략)	제6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u>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야 한다.</u>
<u><신설></u>	<u>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u>

동 법에서 “고려인 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동 법은 고려인 동포가 거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동 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①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②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③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④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

동 지원, ⑤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과 ⑥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행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고려인 동포를 위하여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행 주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려인동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정기적으로 고려인 동포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정부차원의 현지 조사는 최근 한러관계와 같이 조사 대상 국가와 외교적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해당 국가가 조사 활동을 주권 침해행위로 인식할 경우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조사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유사한 현지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 고려인동포 거주지역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부 유럽 지역으로 광범위하여 국외 고려인 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고려인동포 대상 실태조사도 양적

조사가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생활실태 파악 위주로 진행되었는 바,¹⁾ 국외 고려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발간하는 「재외동포현황」 이상의 양적 실태조사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2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 재처럼 정책 현안 및 수요에 따라 실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2년 단위의 의무적 실태조사가 국외 고려인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닌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한정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이명수위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시에도 법률안에서는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으나, 현지 실태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로 수정하여 가결된 바 있음.

1) 고려인동포법 제정(2010년) 이후 고려인동포 대상 실태조사 현황

연도	용역명	용역 목적	발주기관 및 수행기관
2013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실태조사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실태 분석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주카자흐스탄대사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2013	극동 러시아 한인사회 실태조사	러시아 극동 지역 고려인 이주 150주년 계기 고려인의 현재 생활과 현황을 파악하여 동포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2016	러시아-CIS 동포 이주·정주 실태조사	러시아·CIS 동포사회의 이주와 정주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도출	재외동포재단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2024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실태조사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현황 분석 및 고려인들의 전쟁피해 상황 및 필요 지원사항 등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전쟁 피해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향 및 정책적 제언 제시	재외동포청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문 의 처
02)6788-5263